

의약품관리위원회 규정

관리번호	W-6.1(2)	제정일	2013년 02월 15일
승인책임자	병원장	최근개정일	2016년 10월 31일
검토책임자	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	시행일	2016년 12월 01일
주무부서	약국	검토주기	3년
관련근거	의료기관인증기준 6.1	검토예정일	2019년 10월 30일

l. 명칭

의약품관리위원회라 함은 윌스기념병원(이하'병원'이라 함)의 의약품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등 약사업무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약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Ⅲ. 구성

-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내과 원장이며, 간사는 약국장이 되며 이는 당연직으로 한다.
- 3. 위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구매 조달)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IV.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충원된 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V. 위원장 임무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VI.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약품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사용 의약품의 선정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의약품의 사용지침 제정과 투약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4. 항생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 6. 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유효성 및 부작용 등 포함)
- 7.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 8. 의약품 사용평가에 관한 사항
- 9. 표준처방 및 원내 의약품집 작성에 관한 사항



- 10. 의약품 및 위생재료의 임상시험에 관한 사항
- 11. 약화사고 등에 관한 사항
- 12. 응급 및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13. 필요시 처방(p.r.n)의 품목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VII. 회의

-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 2.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한다.
- 3. 임시회의는 병원장이 소집 요구 시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회의에 부임할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
- 5. 경미한 사항은 서면회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 6. 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또는 제안 부서자이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VIII. 의결

- 1.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 진술이나 증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IX. 간사

- 1.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국장으로 한다.
-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X. 보고

- 1.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 2. 회의록은 참석자의 명단을 기록 및 서명 받고 보관한다.

입안자	규정관리위원장	
승인책임자	병원장	
서명일		